

# 學校施設 設備 基準令中 改正令

◎대통령령제6, 854호

1973년 9월14일 공포

학교시설·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각급학교의 체육장(육외 체육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배수가 잘 되거나,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라야하며, 그 기준면적은 국민학교는 7천 8백평방미터이상, 중학교·고등학교·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9천백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체육장면적은 24학급을 기준으로 하되, 24학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또는 미달되는 1학급마다 국민학교는

180평방미터, 중학교는 210평방미터, 고등학교·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240평방미터를 가감한다. 다만, 체육장 1번의 길이 또는 대각선의 길이는 130미터, 그 면적은 중학교는 7천 8백평방미터, 고등학교·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9천백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④동일구내에 2 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겸용할 수 있으며, 그 각급학교의 학급수를 합산한 중학급수를 최상급학교의 학급수로 보아, 그 면적을 산정한다.

⑤체육장에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사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교사) ①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.

1. 보통교실(1학급당 실내면적의 기준은 6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).
2. 과학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.
3. 음악 또는 미술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.
4. 기술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.
5. 시청각교실 및 그 준비실.
6. 도서실.
7. 상담실(국민학교는 제외한다).
8. 관리용 각실(교장실·사무실·숙직실·창고 등).
9.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(양호실·변소·휴게실·탈의실·샤워실등).

②중학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실업교과중 농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실습지 부속사 및 농업 실습실을 공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공업실습실을, 상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상업실습실을, 수산을 선택하는 학교는 수산실습실을, 가정을 선택하는 학교는 가사실 및 재봉실을 각각 두어야 한다.

③보통교실수는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를 두되, 고등학교·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중 이등수업을 하고자 하는 학교로서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"사물함"설비를 갖추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통교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.

④각 특별교실 및 그 준비실의 종류와 교실

수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.

⑤시청자 교실의 실내 면적기준은 별표 2 와 같 이 한다.

⑥도서관의 열람 좌석수 및 비치도서 의 수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.

⑦보건위생에 관한 자실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 이 한다.

⑧상업실 및 관리용 자실은 학교의 규모에 따 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 적을 규정할 수 있다.

⑨유치원의 원사에는 제 1 항제 1 호의 보통교실 및 제 8 호의 관리용 자실과 유희실을 두어야 한다.

⑩제 1 항의 보통교실·각특별교실 및 그 준비 실·시청자교실 및 그 준비실과 도서실에 비 키하여야 할 설비의 종목·수량등은 문교부령 으로 정한다.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 (급수시설) 각급 학교에는 그 규모에 따 라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, 상수도 시설이 는 학교에는 1 학급당 급수전을 2 개 이상 여야 하며,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프시시설을 하되, 수질이 위생상 무해하다고 명된 것이어야 한다.

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0 조 (원장시설) ①각급 학교에는 필요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둘 수 있다.

1. 강당.

2. 체육관.

3. 수영장.

4. 기숙사.

5. 급식시설.

6. 교원사택.

7. 온실.

②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 에 의한 특수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당해 학 교의 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택을, 체육중 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는 체육관을 두어야 한 다.

제 12 조중 “제 5 조제 4 항”을 “제 5 조제 9 항”으로 한다.

제 13 조중 “제 5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·제 9 호 내지 제 12 호”를 “제 5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·제 8 호 및 제 9 호(양호실·휴게실·탈의실·샤워실을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[별표 1] 내지 [별표 4]를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
 ②(미달되는 시설·설비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영 시행당시 그 시설·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 설·설비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문교부령으로 정 하는 연도별 시설보충 기준에 따라 미달되는 시 설·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.

[별표 1]

특별교실 및 그 준비실의 기준수

학 교 명	과학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 (물리교실·화학교실·생물 교실 또는 지학교실)의 수	음악과 또는 미술교과에 필 요한 특별교실수	기술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 (목공실·기계실·전기실 또 는 제도실등)의 수
국 민 학 교	(1) 48학급까지는 1 개 교실 을 둔다. 다만, 24학급 이 하인 경우에는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48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4학급을 초과할 때 마 다 1 개 교실을 가산한다.	학교사정에 따라 둔다.	학교마다 1 개교실을 둔다. 다만, 36학급 이하인 경우 에 는 과학교실 또는 보통교실 을 겸용할 수 있다.
중 학 교	(1) 15학급까지는 1 개 교실 을 둔다. (2) 15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5학급을 초과할 때 마 다 1 개 교실을 가산한 다.	음악교실 (1) 30학급 까지는 1 개교실 을 둔다. 다만, 9학급 이 하인 경우에는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30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30학급을 초과할 때 마 다 1 개 교실을 가산한 다. 미술교실 음악교실과 같은 수로 한다.	(1) 15학급까지는 1 개교실 을 둔다. 다만, 6학급 이 하인 경우에는 과학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15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5학급을 초과할 때 마 다 1 개교실을 가산한다.

고등학교 (인문제에 한한다)	(1) 9 학급까지는 1 개교실을 둔다. (2) 9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 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1 개교실	(1) 45 학급까지는 1 개교실을 둔다. 다만, 12 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45 학급을 초과할 경우에는 30 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1 개 교실을 가산한다. 미술교실 (1) 45 학급까지는 1 개교실을 둔다. 다만, 21 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45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1 개교실을 가산한다.	(1) 45 학급까지는 1 개교실을 둔다. 다만, 6 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과학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. (2) 45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1 개교실을 가산한다.
-----------------	---	--	---

- 참고 1. 준비실은 각 특별교실에 접하여 설치하되, 특별교실 1 개마다 1 개의 준비실을 둔다. 다만,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교실 2 개마다 1 개의 준비실을 둘 수 있다.
2. 이 표중 특별교실의 수는 각 교과단위의 특별교실의 수를 총합한 수를 말한다.

[별표 2]

시청자 교실의 실내면적기준

(단위 : 평방미터)

학급수 학교별	1 2 미 만	1 2 ~ 2 4	2 5 ~ 3 6	3 7 ~ 4 8	4 9 이 상
국 민 학 교	—	—	94	94	188
중 학 교	—	94	94	188	188
고 등 학 교	—	94	94	188	188
실 업 교 등	—	94	94	188	188
전 문 학 교	—	94	94	188	188

참고 : 준비실은 시청자 교실에 접하여 둔다.

[별표 3]

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

구 분	열 램 좌 · 석 수	도 서 수
국 민 학 교	보통교실 겸용	1 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
중 학 교	1 학급당 3 석, 다만, 학교마다 20석이 상이어야 한다.	1 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. 다만,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.
고등학교·실업고등 전문학교·전문학교	1 학급당 5 석. 다만, 학교마다 20석이 상이어야 한다.	1 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. 다만,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.

[별표 4]

보건위생에 관한 각 실의 기준수

실		단	위	기	준		
별	소	변	기	학	급	당	필요한 수
	대	변	기	학	급	당	국립학교 1.5개 이상. 국민학교 이외의 학교 남자 1개 이상, 여자 2개 이상.
양		호 실		학	교	당	1실 이상. 다만, 관리용실 등과 겸용할 수 있다.
휴게실·탈의실·샤워실				학	교	당	자 1실 이상. 다만, 국민학교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建築士

發行人兼 編輯人 : 姜 大 雄  
 登錄番號 : 第 라-1251号  
 登錄日字 : 1967年 3月 23日  
 通卷 第58号 1973年 9月30日發行

發 行 所 : 大 韓 建 築 士 協 會  
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1街60-17  
 ☎ (73) 9491, 9492  
 印 刷 所 : 高 星 文 化 印 刷 株 式 會 社

(非 賣 品)

國民住宅債券

代納 및 賣買

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2가46-5

京一社 (22-3700 (직통)  
 {23-6000 ( " )  
 {22-6000 (연결)

口座 No. 서울農協中部支所 3700  
 第一銀行德壽支店 6000

허 벽